

남의 글의 무단전재는 표절이다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4월부터 저작권 상담실을 개설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회원사측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 있듯이, 이 상담은 출협측의 윤청광 저작권대책위원, 이두영 사무국장, 그리고 필자—이렇게 세 사람이 맡고 있다.

여느 법률상담에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담을 원하는 분은 사전에 질문요지를 적어내거나 적어도 전화로 미리 상담신청을 해두는 편이 좋겠고, 또한 관계증빙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말고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 등 직장의 직원이 상담을 하러 올 경우에는 되도록 업무내용을 잘 아는 책임자나 실무자가 나오는 것이 좋다. 예컨대 책의 내용을 문제삼는 경우에 편집부 아닌 영업부의 직원이 물으러 오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며칠 전에도 나는 상담시간에 맞춰 출협회관에 나갔다. 사무국장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한국○○협회 부설 한국○○연구소' 발행으로 된 「저작권 해설」이란 책자가 눈에 띄었다. 책을 펴보니 문답식으로 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초보자들에게도 저작권문제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겠다 싶어 반가웠다.

그런데 책을 펴들고 몇 대목을 띄엄띄엄 읽어보다가 무척 낯익은 문장들과 만나게 되었다.

“설마...”하면서도 “혹시”하는 마음으로 최근에 낸 나의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를 꺼내어 그 책과 대조해보았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인즉,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번역·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어느 협회에서 간행한 「저작권 해설」이란 책자의 상당부분이 필자의 저서를 그대로 베껴놓고 있었다. 설사 계몽용 비매품이라 하더라도 남의 글의 무단전재는 표절이고, 만일 인용을 할 경우라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있는가”라는 항목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제목부터 똑같다. 그리고 본문도 첫 줄에서 마지막 줄까지 한 자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이다. 이렇게 되면 이쪽은 매우 곤혹스럽다.

나는 「저작권 해설」이란 그 책자에 내 글이 이용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법적으로 하자면 복제권을 침해당한 셈이다. 물론 그 책자에는 내가 저자로 표시되지도 않았으니 성명표시권도 침해되었다. 그 책자안에 내 글이 어느만큼(분량)이나 표절당했는지 더 살펴볼 흥미도 없었다.

그 책자의 서문에 보면 문공부에서 발행한 「저작권의 개념과 운용」이란 간행물을 비롯한 관계단체·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참고·정리한 책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그러나 그 책자는 이미 나온 자료를 참고·정리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고스란히 베끼거나 복사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앞에 적은 필자의 문답식 저작권 해설은 당초 한국출판연구소에서 1987년 가을에 발행한 「국제저작권의 보호와 출판」이란 이름의 책자 속에 들어있던 부분이다. 그런데도 위 ○○협회에서 나온 책자 뒷부분에 적혀있는 참고문헌목록에는 그 책이름은 들어있지도 않았다. 참고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옮겨 써놓았기 때문에 ‘참고문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러나 저쪽을 상대로 개인적인 항의를 할 의향은 조금도 없고 또 그럴 입장도 아니다. 실인즉 그 협회의 임직원들을 잘 알고 지내는 처지일 뿐더러, 평소 저작권문제에 관해서 미력이나마 그쪽의 저문에 응해왔던 터이다. 뿐만 아니라 그쪽의 청은 받아들여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글도 써준 적도 있고, 심지어는 그 협회가 주최한 저작권 세미나에 나가서 계몽성 주제 발표까지 해준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과 같은 무단이용 사태가 빚어진 것을 보면 필시 저작권에 관한 나의 교육이나 자문이 정작 그 협회당무자의 머리에 제대로 섭취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매우 섭섭하다.

그와 같은 교육효과와 측면만을 가지고 내가 당혹해 하는 것은 아니다. 위 협회측의 간행물의 발행시기는 1988년 2위로 표시되어 있음에 비하여 줄저인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는 1988년 4월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만일 1987년 가을에 나온 「국제저작권 보호와 한국」을 읽지 않은 사람이 위의 두 책자를 읽고 대비해보았다면 나중에 나온 책의 저자인 본인이 위 ○○협회 측의 책자를 표절한 것으로 보기에 심상이다. 표절을 당한 피해자가 표절을 감행한 가해자로 오인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법적 수단을 쓴다면 이 또한 가관이 아닌가.

마침 상담객이 없는 사이에 잠시 환담하는 가운데 필자는 다른 상담위원들에게 이런 기막힌 고충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즉,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저작권 상담을 신청하시지요”라는 것이었다. 하기는 의사도 진찰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법이니까—.

“저작권 상담위원의 저작권 상담신청”—이것은 필자 개인의 사적인 객담으로 끝날 수 없는 시니컬한 현상이기에 저작물 이용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그 협회측은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영리의 목적으로 펴낸 간행물이 아니다.(또는 비매품이다.) 「저작권에 관한 계몽이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그 글을 이용했을 뿐이다.” “인용 또는 전재는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

위와같은 인식이랄까 변명도 가정해볼지 하지만 물론 그런 생각은 정당하지 않다. 계몽용으로 비매품을 내는 비영리행위라도 저작물의 무단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글 전부를 자기 글처럼 표절한 것은 인용이 될 수가 없고, 만일 인용을 할 경우라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전재는 전문을 옮겨 쓸 수 있는 이용형태이기는 하나, 현행 저작권법에는 전재의 자유를 인정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허락 없는 전재는 위법이다.

아름다운 저작권에 관해서 쓴 글을 표절당하고 나니 마치 도난방지기를 도난 당한 것 같은 기분이다.

**온라인컴퓨터사식
조판시스템가동**

- 레자프린트 교정
- 입력에서 출력까지 즉시 처리
- 각종 서체 완비
- 컴퓨터가 내장된 수동사식 연결

진영사
733-5755

• 컴퓨터사식사 • 수동사식사
• 광고 기획 • 편집 • 제작 대행

**동보
기획**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제작

120 서울 · 서대문구 미군동 142번지
3131-319

네모

출판 미술 전문

교과서,참고서 컷·삽화
아동 삽화물·카타로그
표지 디자인·팜플렛

313-47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1-1
★ 남아현 상가 216호 ★

**헤겔철학과
현대의 위기**

C. 테일러 지음 / 박찬국 옮김

헤겔 연구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지은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헤겔철학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의도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 그러므로 그는 헤겔이 부딪친 시대적 문제는 무엇이고 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헤겔철학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만큼 평이하면서도 명쾌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 288면 / 4,000원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19-46 전화 924-6161-5